

케냐 (Kenya)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적용대상	근로자, 자영자	근로자, 자영자	-
보험료율 (근로자 / 자영자 / 사용자)	5% / 5% / 5%	5% / 5% / 5%	-
노령연금 수급요건	60세	60세	가입기간 요건 X
일시금	근로자 및 사용자의 총 납부보험료 + 이자	근로자 및 사용자의 총 납부보험료 + 이자	-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65년(사회보장) 및 2010년(헌법)
- 현행법 : 2010년(헌법), 2013년(강제개인계좌 및 적립금고, 2014년 시행)

2 제도형태

- 기초연금, 강제개인계좌 및 임의적립기금제도
- ※ 2013년 국가사회보장기금법은 구 적립기금제도를 18-60세 근로자를 강제 적용하는 개인계좌제도(통상 연금기금제도라 불림) 및 임의적립기금제도로 대체하였음. 구 적립기금제도 가입자들은 강제개인계좌제도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구제도 및 신제도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음

3 적용대상

- 기초제도 : 케냐 국민
- 강제개인계좌
 - 당연적용 :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(공공 및 민간부문)
 - 임의적용 : 자영자
- 적립기금제도
 - 당연적용 : 자영자, 60세 이상 퇴직자, 강제개인계좌제도 수급요건 미충족자
 - 임의적용 : 근로자
 - 특별제도 : 공공부문 근로자

4 재원조달

※ 강제개인계좌 및 신적립기금제도를 도입한 2013년 법은 보험료율을 상향하고 보험료를 2층제도로 전환하도록 하였음 : 1층은 국가사회보장기금(NSSF), 2층은 NSSF 또는 등록된 사적연금제도로 분류됨. 다만, 2014년 법정 판결에 의해 보험료 상향 시행이 연기되었음. 아래 보험료율은 두 층의 보험료율을 합한 수치임

○ 가입자

- 기초제도 : 없음
- 강제개인계좌 및 적립기금
 - 월 가입소득의 5%. 임의가입자는 월 100 shilling 이상 납부, 추가 임의납부 가능
 - 강제가입자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상한액은 4,000 shilling(임의가입인 경우 상한액 없음)

○ 자영자

- 기초제도 : 없음
- 강제개인계좌 및 적립기금
 - 월 가입소득의 5%. 임의가입자는 월 100 shilling 이상 납부. 추가 임의납부 가능
 - 강제가입자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상한액은 4,000 shilling(임의가입인 경우 상한액 없음)

○ 사용자

- 기초제도 : 없음
- 강제개인계좌 및 적립기금
 - 월 임금총액의 5%. 강제가입자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상한액은 4,000 shilling

○ 정부

- 기초제도 : 없음
- 강제개인계좌 및 적립기금 : 없음. 사용자로서 보험료 납부

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연금

- 노령연금(기초제도) : 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70세인 자
- 노령급여(퇴직연금, 강제개인계좌)
 - 60세 도달
 - 조기노령급여 : 50세 도달
 - 고용은 중지되어야 함
- 노령급여(적립기금)

- 50세 도달하였으며 고용이 중지되어야 함
- 이주급여(강제개인계좌 및 적립기금)
 - 케냐와 상호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이주하는 가입자에게 지급

○ 장애연금

- 장애급여(강제개인계좌)
 -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완전영구장애로 판정받고 장애 발생 전 36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해야 함
 - 국가사회보장이사회에 의해 지명된 의사가 장애 심사
- 장애청산금(적립기금)
 -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완전영구장애로 판정되어야 하며 장애연금 납부요건이 충족되어야 함
 - 국가사회보장이사회에 의해 지명된 의사가 장애 심사
- 장애급여(적립기금)
 - 신체적 또는 정신적 완전영구장애로 판정되었거나 부분장애로 인하여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지급
 - 국가사회보장이사회에 의해 지명된 의사가 장애 심사

○ 유족연금(사회보험)

- 유족연금(강제개인계좌)
 - 사망자가 사회보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또는 사망 당시 납부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
 - 수급가능 유족은 사망자에 의해 지명된 사람을 포함함. 지정된 유족이 없는 경우 우선순위 피부양 배우자, 고아, 부모 및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
- 유족청산금(강제개인계좌)
 - 사망자의 납부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 지급
 - 수급가능 유족은 사망자와 함께 거주한 배우자 또는 18~60세의 모든 법적 상속자
 - 상호협정에 의해 해외지급 가능
- 유족급여(적립기금) : 계좌잔액 전부를 인출하기 전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지명된 수급자 또는 피부양 가족 구성원에게 지급
- 장제비(강제개인계좌) :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지급, 수급가능 유족은 배우자 포함; 배우자 부재 시 부모, 형제, 자매 또는 장례비용을 지불한 자에게 지급

6

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기초제도) : 월 2,000 shillings 지급, 연금은 2개월마다 지급됨
- 노령급여(강제개인계좌)
 - 가입자는 3가지 옵션을 가짐: 등록된 보험사로부터 종신연금권 구매, 부분일시금(1층 전액 및 2층의 최대 1/3) 수령 및 잔액에 대한 연금권 구매, 또는 부분일시금(1층 전액

및 2층의 최대 1/3) 수령 및 잔액에 대한 정기 수급

- 조기노령급여 : 급여가 지급됨

- 노령급여(적립기금) : 근로자와 사용자 납부 총 보험료에 이자 가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
- 이주급여(강제개인계좌 및 적립기금) : 근로자와 사용자 납부 총 보험료에 이자 가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

○ 장애급여

- 장애급여(강제개인계좌) : 급여는 가입자의 1층 및 2층 합산액에 가입자의 1층 최종 월 보험료를 잠재적 고용 개월 수(장애 발생일로부터 퇴직연령까지의 기간 또는 90개월 중 낮은 수)로 곱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됨
- 장애청산금(강제개인계좌) : 근로자와 사용자 납부 총 보험료에 이자 가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
- 장애급여(적립기금) : 근로자와 사용자 납부 총 보험료에 이자 가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

○ 유족연금

- 유족연금(강제개인계좌) : 급여는 가입자의 1층 및 2층 합산액에 가입자의 1층 최종 월 보험료를 잠재적 고용 개월 수(사망일부터 퇴직연령까지의 기간 또는 90개월 중 낮은 수)로 곱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됨
- 유족청산금(강제개인계좌) : 근로자와 사용자 납부 총 보험료에 이자 가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
- 유족급여(적립기금) : 근로자와 사용자 납부 총 보험료에 이자 가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
- 장제비(강제개인계좌) : 2,500 shilling을 일시금으로 지급

7

관리운영기관

- 국가사회보장기금신탁이사회(National Social Security Fund Board of Trustees)
 - 국가사회보장기금 감독 및 관리
- 노동사회보호부(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rotection)
 - 제도 운영
 - <http://www.socialprotection.go.ke>
- 국가사회보장기금(National Social Security Fund)
 - 강제개인계좌 및 적립기금제도 운영
 - <http://www.nssf.or.ke>

<2019년 ISSA 자료>